

현재 추진 중인 부패특별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및 관련 보도자료 사본일체

- 「부정방지기본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작년 12월 3일 국민회의에서 의원입법으로 「부정방지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 법무부로서는 올바르게 입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책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9월 29일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로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최근 정당, 사회단체, 재야 법조인 및 학계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는 바
 - 앞으로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요청하신 보도자료 사본은 이를 작성한 바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개정 및 UN인권위원회 인권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

□ 변호사법

○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법조비리 척결방안 마련
 -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변호사 소개금지 등 7가지 대책반영
 -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비리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제도 도입 등 8가지 대책반영
- 변호사단체의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변호사 징계업무·등록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단체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을 반영
 - 변호사단체의 설립강제 및 변호사의 단체가입강제 각 폐지
 - 변호사 등록·징계권의 국가환수

○ 법무부의 공식입장

- 위와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변호사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조속히 시행되기를 요망함

□ UN인권위원회 인권권고안

-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존의 국가기능인 수사와 사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인권교육·홍보와 인권연구활동을 담

당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인권상황의 전반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UN에서는 [국내 인권기구 설립권고안]을 발간하고 각국에 인권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음

- UN의 인권위원회 설립권고안은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업무, 인권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요지는 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임
-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준비하면서 UN권고안의 원칙을 충실히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UN으로부터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인권위원회 제도를 참고하였음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무부의 인권법안은 UN의 인권위원회 설립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며, 외국의 인권관계 전문가로부터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음

6. 국제사면위원회 입장표명 내용 및 법무부의 입장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사면위원회 입장표명

- ▲ '99.6.16.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각국의 1998년 1년간의 인권 상황을 수록한 연례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고,
- ▲ '99.8.16. 「8.15 사면」과 관련하여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와 8.15 사면에 관한 국제사면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입장표명 내용

▲ 연례인권보고서 요지

- 150명 이상의 정치범이 두차례에 걸친 사면으로 석방조치 되었으나, 400여명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과 수백명의 노동사범이 구속중에 있음
- 경찰 및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보고되고 있음
- '98년 말 현재 37명의 사형수가 수감중에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치범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이래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여성의 권리향상,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약속하였음
- 김대중 대통령은 민간교류 활성화를 포함하여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펴 나가고 있음

▲ 「8.15 사면관련 성명서」 요지

- 양심수 석방조치는 환영하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체포사태에 우려를 표명함
- 국제사면위원회는 미석방 양심수의 석방을 위하여 계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임
-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보안법개정 약속은 즉각 실행되어야 함
- 5명의 사형수에 대한 감형조치를 환영함과 아울러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함

■ 법무부의 대응조치

▲ 연례보고서 발표에 대한 대응

- '99.7.2. Korea Times 신문에 법무부 인권과장 명의로 「Human Rights in Korea」 제목의 반박문 기고
- 주요내용은,
 -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대폭 석방·감형·사면
 - 사상전향제의 폐지 및 준법서약제 도입
 - 노사간 자율과 합의를 존중하는 노동문제 해결
 - 형집행과정에서의 인권보장
 - 인권법제정 및 인권위원회의 설치

· 국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임

※ 별첨1 「국제사면위원회 연례보고서 관련 Korea Times 기고문」 참조

▲ 「8.15 사면 관련 성명서」에 대한 대응

- '99.8.24. 법무부 인권과장은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에 위 성명서 내용을 반박하는 서신을 발송하여 이를 국제사면위원회 본부에 전하여 주도록 조치
- 주요내용은,
 -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 국내 정치범 현황
 -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사면에 대한 반박
 - 민노총 관련자들에게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문제임

※ 별첨2 「서신」 참조

국제사면위원회 연례보고서 관련 Korea Times기고문

'99.6. 법무부 인권과장 한상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만에 최초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인권의 중요성에 관하여 세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새로운 법무행정 지표로 설정하고,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치하고 다양한 마약감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대폭 석방, 감형, 사면하였습니다.

'99.2.25.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에서 26년에서 39년간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것을 비롯하여 작년과 금년 세 차례 사면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206명을 석방하고, 30명을 감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전 600여명에 이르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수감자가 '99.6. 현재 32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미전향장기수의 경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사상전향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즉, 종래의 「사상전향서」를 출소 후 법을 지킨다는 「준법서약서」로 대체하였습니다.

「준법서약서」는 「사상전향서」와는 달리 어떠한 주의·주장을 포기하게 하거나 바꾸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을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법에 위반될 경우에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처벌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98.에는 전년에 비하여 전체 국가보안법위반 입건자 수가 12.3% 감소하였고, 구속인원은 27.5%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남용금지 조치는 「사상전향제」 폐지와 함께 이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수사와 형집행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인권침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인권우선정책」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종래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셋째, 노동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간의 자율과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현장의 불법파업이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사간 자율적 협상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여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노사자율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과격해진 근로자들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도외시한 채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비조합원과 간부직원을 구타하고 공장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부득이 의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 등 극히 일부의 근로자만을 구속하는 등 처벌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98. 한해동안 폭력, 파괴를 수반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근로자 5,570여명 중 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하여 동료직원과 간부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생산시설을 파괴한 주동자 219명만 구속하였으며 그 밖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전원 불구속처리 하였습니다.

넷째, 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찰청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하고 교도소와 구치소의 모범수용자에게 전화사용을 허용하였으며, 가족합동면회를 확대 실시하고, 신문구독과 텔레비전 시청도 폭넓게 허용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사회적응 효과를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결수의 사복착용을 시범 실시 하고, 장기 수형자의 부부에 및 가족간 유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부 만남의 집」을 시범 운영하며, 모범 수형자의 외출·외박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국민의 정부」 100대 정책과제인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와 당·정협의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인권법안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구제와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외에 범죄로 규정되지 아니한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구제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실천을 위해 연내 인권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권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인권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면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인권에 관한 한국의 이미지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인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자행한 개인에 대하여 국제적 처벌을 담당할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준비를 비롯한 인권분야의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인권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발전보다는 인권보장이 국가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간주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여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모든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경제발전의 모범국」뿐 아니라 「인권의 모범국」으로서 인권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Human Rights in Korea

By Han, Sang-Dae
Director of Human Right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under the leadership of newly-elected President Kim, Dae-Jung,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a peaceful power transfer between different political partie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oundation of Korean government about a half decade ago, has pursued for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s the new government's primary objective. In line with the world's acknowledgment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the government purports under such objective to bring realization of democracy in which human rights of every citizen are respected under respect for freedom and justice.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set new basic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the "Fair and Transparent Legal Enforcement" and exerted its utmost efforts to simultaneously implement the ideals of establishing legal order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s follows:

Firs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signated as one of its most urgent tasks the eradication of human rights infringements such as harsh treatments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hrough observation of due process. Also, the Ministry has actively tried to develop and utilize scientific investigative methods to enable effective investigation. The establishment of DNA Information Bank at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narcotics investigative methods are indeed the recent examples.

Seco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leased, reduced the prison terms of or reinstated offenders of the civil rights of national security or labor law on humanitarian grounds.

On February 25, 1999, in granting amnesty in celebrat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the Ministry has released 17 long-term sentenced communist prisoners in suspension of the execution, who have served for 26 years to 39 years. Also the Ministry has released 206 and remitted 30 "National Security Act" offenders. As a result, the number of prisoners, who had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Act" has reduced from around 600 in the beginning of the new government to 321, as of June, 1999, so far through three pardons granted since last year.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bolished the "Ideology Conversion System" which was on controversy for violating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replaced with the "Pledge to Observe Law

System" which requires a pledge for observing law from the prisoners following their release.

Different from the "Ideology Conversion System," the "Pledge to Observe Law System" does not force prisoners to forfeit or change their political beliefs or opinions, but requests a pledge from them that they would comply with the laws without committing a crime again and live as law-abiding citizen. For the very reason, the "Pledge to Observe Law System" therefore does not infringe upon the "Freedom of Conscienc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the Ministry has prohibited broad interpretation or abuse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has been prudent in taking a punitive action compatible to the crime committed when applying the Act.

Consequently, the number of "National Security Act" violators in 1998 decreased by 12.3% as compared with the same period in the previous year, and that of arrestees also dropped by 27.5%.

The prohibition on abuse of the Act, along with the abolition of the "Ideology Conversion System," is part of the new government's "Human Rights Priority Policy," under which investigation of "National Security Act" offenders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against them must be conducted without any human rights infringement.

Also, the Ministry is on the process of considering and reviewing a revision of the existing "National Security Act" which has been subject to criticism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to eliminate unjust human rights infringements.

Third, in concern of labor disputes, the Ministry of Justice highly respects the autonomy of and agreements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Th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provide a guidance leading to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with their own autonomy even in the case of an illegal labor strike as long as it involved no physical violations and destruction.

It is true that many laborers have undergone much hardship in result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under the "IMF" economic crisis last year.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for peaceful resolution by labor and management autonomy, the laborers under economic hardship became violent beating nonunionists and corporate officials with steel pipes as well as damaging factory facilities, thereby disregarded a peaceful means of negotiation by resorting to illegal conducts of violence.

The government could not allow such illegal conducts of violence by the laborers and had no choice but to impose enforcement of law upon them. However, even in doing so,

the Ministry has been prudent in taking punitive actions that only people in the leadership and active participants were arrested.

Among 5,570 laborers who participated in the illegal conducts of violence and destruction during the year of 1998, only 219 people in the leadership who carried deadly weapons including steel pipes, injured nonunionists and corporate officials, and damaged the factory production facilities were arrested. The rest were investigated without detention.

Fourth,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ndeavored in various aspects to ensure human rights protection of inmates serving their sentences.

Specifically, the Ministry has placed lawyer's interview rooms in all public prosecutors' offices, and has allowed well-behaved inmates of prisons or detention centers to use telephones. Furthermore, the Ministry has expanded the scope of meetings between inmate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has broadly permitted inmates to subscribe to newspapers and watch television. These measures are all intended to protect human rights of inmates as well as to help them adapt themselves to society more easil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Ministry presently implements the use of plain-clothes to the convicted in criminal trials and operates the "Meeting House for Married Couples" on test to promote

the marriage-bond between couples and close relationships among family members for the long-term sentenced prisoners. Allowing a temporary leave and sleep-out for well-behaved prisoners are also currently under review.

Fifth,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re near at hand. This project is one of the commitments made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as well as an item of the "One Hundred Major Assignments" of the "People's Government."

The Draft of the "Human Rights Act", which is finalized after scores of public debates, seminars and government-ruling party policy conference, will include provisions on surveillance and redress of human rights infringements, as well as education and publicizing on human rights. Moreover, there will be provisions on correction and redress of discriminatory acts which are not stipulated as a crime in the criminal laws, and establishment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o implement the spirit of the Act.

With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is scheduled to set up next year, will greatly contribute to improving human rights throughout the society. Consequently, the image of Korea as a human rights-protecting nation will also be significantly enhanced.

Last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ndeavor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with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ivities.

Internationally, the Ministry has been closely involved in the preparation for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which individuals responsible for genocide, war crime, and inhumane crime can be adjudicated for wrong conducts. Also by faithfully abiding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greements, it has been endeavoring to the best of its capability to carry out its role to match the expect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orthcoming 21st century would value human rights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in evaluating the degree of a country's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exert its utmost efforts to protect and improve human rights of each and every individual, according priority to human rights protection in performing its duties, as it has done in the past one(1) year. It is our strong belief that our country will be aligned with other human rights advanced countries as an "Exemplary Country of Human Rights" as well as "Exemplary Country of Economic Development."

< 별첨2 > 서신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허창수 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인권이 존중되지 아니한 시기에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의 활동은 우리나라 인권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 결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음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따끔한 충고는 우리나라의 인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권정책의 방향타로서의 구실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16.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와 8.15. 사면에 관한 국제사면위원회 성명서」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촉구」와 관련하여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존립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안보형 사법이며,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국가안보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형법 또는 안보형사 특별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범법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극히 신중을 기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하여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중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개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극히 중요한 사항으로써, 국민여론 수렴, 외국 입법례 연구검토, 공청회 등 신중하고도 광범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므로 「즉시」 개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정치적 수인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먼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정치적 수인들이 190여명에 이른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190여명」이라는 숫자가 집계된 것인지 정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위반사범 등 소위 「공안사범」은 폭력적 국가체제전복을 위한 이적단체조직, 선전·선동 및 폭력시위 등에 의한 범죄사실로 구금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순수한 정치활동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례도 없었으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수인」이 만일 「정치활동을 이유로 수감된 자」라는 의미라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치적 수인」은 단 한명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 「8.15.사면시 영남위원회 관련자 9명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먼저,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 변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건설을 목표로 활동한 범죄사실로서 기소되어 1심 재판결과 주동자들은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인임에도 1심재판 후 항소하여 현재 영남위원회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계속중에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사면법상 사면은 형확정자에 한하여 시행될 수 있으나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은 항소심 재판계속중에 있는 관계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면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면여부를 8·15사면의 평가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사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부승인하에 방북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가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위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고 방북하였다가 돌아온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현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방북활동 중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왔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연설하는 등 방북허가 목적과는 달리 반국가 체제 언동을 하여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법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맡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들의 방북 중 활동내용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연히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조사 후 범죄혐의 내용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세계각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인권상황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며 우리정부도 그 노고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에 대한 인권개선 권고는 인권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해당국가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한 후 그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확인절차 없이 어느 일방의 주장을 반영한다면 국제사면위원회의 권위는 실추되고 권고내용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8.15.사면관련 성명서」에서도 영남위원회 관련자 9명이 사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적 이유를 망각한 채 「사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부각하거나, 정치적 수인이라고 주장하는 190여명의 공소사실이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적 활동만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면위원회가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그간의 국제사면위원회의 정당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정부의 입장이나 사실관계확인을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국제사면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본부에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한국 인권상황 개선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9. 8. 24.

법무부 인권과장

8. 인권법 제정추진 관련 법무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주요 쟁점사항 대비표

○ 인권법 제정추진 관련 법무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주요 쟁점사항 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쟁점	시민단체주장	법무부 입장	비고
1	설립형태	국가기구로 하지 않으면 위상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구로 하면 다른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감시가 어려움 ○ 정부시책에 관하여 국가기관간에 이견이 표출되는 경우 정책혼선과 기강혼란 초래 ○ 재산취득·처분, 기부수령이 어려워 재정적 독립에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권고안도 정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 권장 ○ 호주, 뉴질랜드, 영국, 남아공 등이 법인형태
2	시행령 위임범위 축소	시행령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위임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은 법률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세부적인 절차만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반하여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제3자적 효력을 가지거나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까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수는 없음 	
3	조사범위 확대	제한된 조사범위를 모든 인권침해행위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가 모든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조사범위는 우리 현실상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한함이 상당 ○ 조사대상이 아닌 사항도 법령·정책 개선권고,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으로 관여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뉴질랜드는 차별행위만, 호주는 차별행위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만 조사대상으로 규정

연번	쟁점	시민단체주장	법무부 입장	비 고
4	자료제출 거부 사유 축소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사유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사유는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 자료제출 거부시에도 사실조회를 통하여 필요사항의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뉴질랜드 등 외국 입법례도 유사한 범위로 제한
5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형사처벌	인권위 조사권의 강화를 위하여 조사거부는 형사처벌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요구 불응시 제재수단이 전혀 없고, 법원의 증인출석요구 거부에도 과태료만 인정되므로 인권위 조사에 관한 형사처벌은 부적절 과태료만으로도 강제효과 충분 	
6	권고 등 통보절차 폐지	연례보고서, 인권위 활동상황의 법무부 통보는 법무부의 감시활동이므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가 인권위의 활동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이고, 사후에 통보만 받을 뿐이므로 인권위 활동을 사전에 제약하는 것이 아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국가가 통보조항을 규정

3. 세계 각국의 인권법 제정 현황 및 주요내용

=====

○ 세계 각국의 인권법 제정 현황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각국의 인권위원회 비교 1부.

현정부 출범이후 법무부(산하기관 포함)에서 시행되거나 신설된 제도, 각종 프로그램, 운동, 위원회 등의 현황(재소자 면회 사전예약제, 민영교도소, 교정행정 현대화 계획 등)

○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교정행정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 및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범수형자 전화통화 허용
'98. 4월 영등포교도소 등 4개기관 시범시행, '98. 10월부터 전 교정기관 확대시행
- 재소자 가족 합동면회 확대
'98. 5월부터 누진계급 제3급 이하자도 합동면회 대상자에 포함하고, 면회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
- 접견예약제도 신설
'98. 7월 춘천교도소 등 4개기관 시범시행, '98. 10월부터 전 교정기관 확대시행
- 과실범 전담교도소 신설
'98. 7월 수원교도소를 전담교도소로 지정, 과실범을 일반형사범과 분리수용하여 과실범에 상응한 처우 실시
- 수형자 자치제 시행
'98. 10월 의정부교도소 등 4개기관 시범시행, '99. 2월부터 전 교정기관의 모범수형자, 과실범 등에게 자치생활 허용
- 재소자 손목시계 착용
'98. 10월 미결수용자에게 손목시계 착용허용, '99. 5월부터는 3급 이상의 수형자에게도 착용허용

각국의 인권위원회 비교

구분	위임인명칭	직위	위원수	기능	인사권	예산권
캐나다 (1977년)	중립 (법무장관 추천)	비공무원 <법인>	8명(성인7년, 미성인3년)	· 국민행위 관련 진정조사 및 구제 · 인권침해 행위 및 국민행위 관련 진정조사·구제	위원장 위원 (의원, 고수동, 공무원외 4인)	위원회성, 의회
호주 (1981년)	중립 (법무장관 추천)	비공무원 <법인>	7명 (7년)	· 국민행위 관련 진정조사·구제 ·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조사·구제	위원장 위원	법무부
뉴질랜드 (1977년)	중립 (법무장관 추천)	비공무원 <법인>	7명 (5년)	·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조사·구제 · 국민행위 관련 진정조사·구제	위원장 위원	위원회에서 예산·징역, 승의
핀란드 (1987년)	비공립	공무원	5명 (7년)	· 국민행위 관련 진정조사·구제 ·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조사·구제	위원장 위원	정부
인도 (1993년)	비공립 (수선, 최인이, 대법장관, 동으로, 선정, (인)이 추천위원회 추천)	공무원	5명 (5년)	· 국민행위 관련 진정조사·구제 ·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조사·구제	위원장 위원	정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5)	비공립 (국회 추천)	비공무원 <법인>	11명 (7년)	· 국민행위 관련 진정조사·구제 ·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조사·구제	위원장 위원	내무부
영국 (1975년)	비공립 (국회 추천)	비공무원 <법인>	13명 (3년)	· 국민행위 관련 진정조사·구제 ·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조사·구제	위원장 위원	교육고용부

○ 미국: 법무성 인권과(감사 250명, 직원 300명)에서 인권침해행위 조사
○ 일본: 법무성 인권총괄과에서 100명 인권옹호위원 약 14,000명 특별하여 인권침해행위 조사

- 학과교육 중점교도소 운영
'99. 1월 춘천교도소 등 4개교도소에 고등과를 논산구치소를 중등과 학과교육 중점교도소로 지정, 학교식 정규교육 실시
- 교도관 감시없는 외부기업체 출·퇴근제 시행
'99. 3월부터 수원교도소 등 2개기관에서 모범 수형자에게 교도관의 감시없이 자율적으로 외부기업체에 출·퇴근 작업을 시범시행후 '99. 6월부터 광주교도소 등 8개기관으로 확대 실시
- 모범수형자 외출·외박제 시행
수용자의 취업, 가사문제 등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해결과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99. 7월부터 시행
- 미결수형자 출정 등 외출시 사복착용
'99. 4월 서울구치소 등 5개기관 시범시행, '99. 6월부터 전 교정기관으로 확대시행
- 부부 만남의 집 운영
'99. 6월 대전교도소 등 4개기관에 침실, 부엌 등이 갖춰진 주택 형태의 「부부 만남의 집」을 설치, 수용자가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과 1박2일간 생활 허용
- 행형법 개정
계구사용 요건 엄격화, 징벌유예제도 도입 등 인권신장과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정비, '99. 정기국회에 제출예정
-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 추진
교정시설 신축에 따른 재정난 타개와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민영교도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중에 있으며 '99. 12월경 국회 제출예정

21. 재소자 수용환경 개선대책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과 평가

- 민간교도소 제도
- 계구사용요건 엄격화 및 징벌유예제도
- 미결수 사복착용
- 재소자 면회 사전예약제
- 모범수형자 자율 통근작업 실시
- 부부만남의 집 운영
- 모범수형자 외출·외박제

-
- 민영교도소 제도는 현재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계구사용요건 엄격화 및 징벌유예제도는 현재 추진중인 행형법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행형법중개정법률(안)」은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미결수 사복착용은 '99. 4월 시범실시후 '99. 6. 1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의 명예보호 및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수용자 면회예약제는 '98. 10월부터 전 교정기관에서 시행하여, '99. 9월 현재 956,000여건을 실시하였으며, 면회온 가족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모범수형자 자율통근 작업은 수형자의 자활의욕과 자율심 고취를 위해 '99. 3월 시범실시후 '99. 9월 현재 8개기관 225명의 수형자가 직원의 감시없이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을 하고 있으며, 수형자 사회적응력 배양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부부만남의 집은 장기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감 해소를 위해 '99. 6. 29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 교도소(안양, 대구, 대전, 광주)에 개관하여 '99. 9월 현재 모범수형자 50명이 이용하였으며, 가족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모범수형자 외출·외박제는 취업, 가사문제 등 수용자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해결과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99. 7. 1 시행하여 '99. 9월 현재 6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사회체험기회 확대 및 안정된 수용생활 유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현황 : 교도소
· 구치소 자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98.1.~'99.8. 현재까지)

-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현황 : 교도소
· 구치소 자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98.1.~'99.8. 현재까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1부.

교도소·구치소 자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98. 9 ~ ’99. 8. 31)

법무부

’98년도 종합감사 실시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가. 대상기관 : 7개 기관(부산·인천구치소, 안양, 부산, 목포, 순천, 장흥교도소)
- 나. 실시기간 : ’98. 10. 19 - 11. 19

2. 중점 감사사항

- 가. 인사, 복무, 보안 및 사무관리 실태
- 나. 예산집행 및 시설·장비 관리 실태
- 다. 교도작업 운영실태
- 라. 재소자 수용관리 실태
- 마. 접견 및 영치금 관리실태 등

3. 감사 실시결과

가. 지적건수 및 처분요구

구분	건수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천원)				행정상 조치
		계	경고	주의	계	환급	회수	재수입등	
건수	92	55	30	25	17	3	9	5	시정 37
인원	121	49	15	34	25,950	2,074	8,611	15,264	

나. 주요 지적사항

- 비상대기소 입주자 선정 등 부적정
- 수용자 피복관리 불철저
- 수용자 부식 및 자변약품 구입계약 불철저
- 기준 징벌규정 미적용

다. 제도개선 사항

-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관리 제도 개선

'99년도 종합감사 실시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가. 대상기관 : 8개기관(서울지방교정청, 영등포구치소, 광주·마산·진주·청주·청주여자·의정부교도소)
- 나. 실시기간 : '99. 3. 29 - 5. 21

2. 중점 감사사항

- 가. 인사, 복무, 사무관리 및 보안업무 실태
- 나. 예산집행 실태
- 다. 국유재산 및 시설유지관리 실태
- 라. 재소자 수용관리 실태
- 마. 교도작업 운영실태 등

3. 감사 실시결과

가. 지적건수 및 처분요구

구분	건수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천원)				행정상조치
		계	경고	주의	계	회수	변상	재수입등	
건수	38	38	6	32	6	2	1	3	
인원	70	70	9'	61	10,853	1,106	697	9,050	

나. 주요 지적사항

- 수용자관리 및 징벌집행 불철저
- 공사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 불철저

다. 제도개선 사항

- 수용자 거실지정의 문제점

교도소구치소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98. 1. ~ '99. 9. 30)

법 무 부

'98년도 제2차 종합감사 실시결과

1. 감사실시 개요

가. 대상기관 : 8개기관(광주지방교정청, 대전, 전주, 영등포, 수원, 청송제2, 안동, 군산교도소)

나. 실시기간 : '98. 4. 6 - 5. 30

2. 중점 감사사항

- 가. 재소자 수용관리 실태
- 나. 교도작업 운영 실태
- 다. 접견 및 영치금 관리실태
- 라. 인사·사무 및 공직기강
- 마. 예산집행 및 물품·회계관련 업무

3. 감사 실시결과

가. 지적건수 및 처분요구

구분	건수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행정상 조치
		계	경고	주의	계	회수	재수입	환급등	
건수	94	92	20	72	13	9	1	3	시정 2
인원	215	215	28	187	14,812	4,212	10,010	590	

나. 주요 지적사항

- 물품 및 시설관리 불철저
- 교도작업 계약체결 및 재고관리 불철저
- 행형성적 및 누진처우 관리 부적정
- 보안장비 수불기록 불철저

다. 제도개선 사항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음식물쓰레기 제외)

'98년도 제5차 종합감사 실시결과

1. 감사실시 개요

가. 대상기관 : 7개기관(부산·인천구치소, 안양, 부산, 목포, 순천, 장흥교도소)

나. 실시기간 : '98. 10. 19 - 11. 19

2. 중점 감사사항

- 가. 인사, 복무, 보안 및 사무관리 실태
- 나. 예산집행 및 시설·장비 관리 실태
- 다. 교도작업 운영실태
- 라. 재소자 수용관리 실태
- 마. 접견 및 영치금 관리실태 등

3. 감사 실시결과

가. 지적건수 및 처분요구

구분	건수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 조치(천원)				행정상 조치
		계	경고	주의	계	환급	회수	재수입등	
건수	92	55	30	25	17	3	9	5	시정 37
인원	121	49	15	34	25,950	2,074	8,611	15,264	

나. 주요 지적사항

- 비상대기소 입주자 선정 등 부적정
- 수용자 피복관리 불철저
- 수용자 부식 및 자변약품 구입계약 불철저
- 기준 정별규정 미적용

다. 제도개선 사항

- 재소자 자변물품 공급관리 제도 개선

'99년도 제2차 종합감사 실시결과

1. 감사실시 개요

가. 대상기관 : 8개기관(서울지방교정청, 영등포구치소, 광주·마산·진주·청주·청주여자·의정부교도소)

나. 실시기간 : '99. 3. 29 - 5. 21

2. 중점 감사사항

- 가. 인사, 복무, 사무관리 및 보안업무 실태
- 나. 예산집행 실태
- 다. 국유재산 및 시설유지관리 실태
- 라. 재소자 수용관리 실태
- 마. 교도작업 운영실태 등

3. 감사 실시결과

가. 지적건수 및 처분요구

구분	건수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천원)				행정상조치
		계	경고	주의	계	회수	변상	재수입등	
건수	38	38	6	32	6	2	1	3	
인원	70	70	9	61	10,853	1,106	697	9,050	

나. 주요 지적사항

- 수용자관리 및 징벌집행 불철저
- 공사감사 업무처리 부적정
-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 불철저

다. 제도개선 사항

- 수용자 거실지정의 문제점

17. '98. 1월부터 '99. 9월 현재까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복무지도·감독보고서·감찰보고서

- '98. 1 ~ '99. 9월 현재까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대한 복무지도·감독, 감찰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으로 대체 제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분야	실시기관	기간	비고
정기순회점검 및 경비교도대 종합 지휘검열	17개기관	'98. 1 ~ '99. 9월	12개기관 실시예정
수용자 교육·교화·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운영실태 점검	30개기관	"	
공안(관련)사범수용·교화, 경비교도대 운영 및 복무실태 점검	22개기관	"	
급식·의료·시설·영치금 관리실태 확인 점검	13개기관	"	

15. 여성범죄자 발생현황, 여성재소자 가석방 현황('97.1.1 ~ '99.8.31)

○ '97. 1. 1 ~ '98.12.31 현재까지 여성범죄자 발생 현황

女性犯罪者 發生 犯行動機

'97.1.1. ~ '98.12.31.

單位：名

年 度	區 分	計	利 慾	射 倖 心	報 復	家 庭 不 和	好 奇 心	誘 惑	偶 發 的	現 實 不 滿	不 注 意	其 他
1 9 9 7 年 度	計	278,007	46,592	4,039	940	1,075	3,296	1,270	26,533	2,124	39,160	152,978
	小 計	120,607	21,369	3,513	314	544	982	811	5,895	687	2,984	83,508
	刑 罪											
	財產 犯罪	88,401	18,388	1,354	55	73	585	241	1,248	86	1,870	64,501
	強力 犯罪	8,397	371	33	146	176	67	7	3,787	245	179	3,386
	偽造 犯罪	3,210	628	19	-	3	16	9	32	8	75	2,420
	公務員 犯罪	64	12	-	-	-	1	-	2	-	5	44
	風俗 犯罪	11,978	1,317	2,056	18	254	279	544	313	51	232	6,914
	過失 犯罪	666	14	3	-	-	1	-	28	3	349	268
	其他 刑法 犯罪	7,891	639	48	95	38	33	10	485	294	274	5,975
法 犯												
特別 法 犯	157,400	25,223	526	626	531	2,314	459	20,638	1,437	36,176	69,470	
1 9 9 8 年 度	計	339,104	59,003	4,085	861	1,394	2,417	1,954	32,023	1,870	45,722	189,775
小 計	143,011	26,304	3,642	241	595	998	1,168	7,255	626	3,163	99,019	
刑 罪												
財產 犯罪	107,959	22,956	1,746	37	72	636	453	1,786	100	1,971	78,202	
強力 犯罪	10,037	484	27	134	247	41	20	4,526	271	196	4,091	
偽造 犯罪	3,635	742	19	1	8	16	15	36	3	72	2,723	
公務員 犯罪	95	12	-	-	-	-	-	2	-	3	78	
風俗 犯罪	12,517	1,362	1,806	4	224	265	665	359	42	282	7,508	
過失 犯罪	575	26	5	1	1	2	1	24	1	306	208	
其他 刑法 犯罪	8,193	722	39	64	43	38	14	522	209	333	6,209	
法 犯												
特別 法 犯	196,093	32,699	443	620	799	1,419	786	24,768	1,244	42,559	90,756	

○ 현재 검찰에서는 범죄분석에 의하여 매년 1회씩 전항과 같은 양식에 의하여 여성범죄자 발생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동 분석에만도 3~4개월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지검별 분석, 월간 분석을 따로 하기에는 현재의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요구하신대로 제출하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7. 1. 1 ~ '99. 8. 31 현재까지 여성수용자 가석방 현황

구 분	계	97년	98년	99. 1 ~ 8월
인 원	576명	110명	244명	222명

22. '98. 1월부터 '99. 9월까지 재소자 수용실태와 관련하여

- 각 교도소, 구치소 수용사에 대한 징계위 소집건수와 처리결과 / 재소자 징벌집행 현황 / 교도관 폭행·가혹행위 적발 현황과 이로 인해 고소·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 '98. 9 ~ '99. 9월 현재까지 교정시설별 징벌위원회 소집건수는 징벌인원과 비슷하며, 징벌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교정시설별 징벌집행 현황

○ '98. 1 ~ '99. 9월말 현재까지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수용자가 고소한 건수는 모두 59건으로 처리결과는 무혐의 21건, 고소취하 5건, 기소유예 3건, 재판계류중 1건이며, 나머지 29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붙임 # 교정시설별 징벌집행 현황

○ '98년 징벌집행 현황

구분 소별	계	금 치			청원작업 정 지	경 고
		소 계	2 월	1 월		
계	7,708	7,141	3,448	3,453	240	566
서울(구)	555	444	114	185	145	111
안양(교)	497	491	250	237	4	6
영등포(구)	259	244	101	134	9	15
성동(구)	73	71	23	47	1	2
수원(구)	112	112	41	63	8	
인천(구)	131	131	45	86		
영등포(교)	139	103	27	66	10	36
수원(교)	59	55	34	21		4
의정부(교)	147	140	60	79	1	7
춘천(교)	223	217	126	87	4	6
원주(교)	288	283	197	85	1	5
강릉(교)	62	51	24	19	8	11
평택(지)	21	21	10	10	1	
대구(교)	640	622	393	227	2	18
청송(교)	288	267	105	162		21
부산(구)	433	400	161	230	9	33
부산(교)	240	238	117	121		2
마산(교)	273	268	113	155		5
청송1(감)	75	63	42	21		12
청송2(감)	71	60	27	33		11
청송2(교)	91	88	50	37	1	3
김천(소)	73	73	49	24		
진주(교)	241	235	121	111	3	6
안동(교)	140	134	49	82	3	6
울산(구)	76	68	19	48	1	8
경주(교)	74	70	35	35		4
대전(교)	511	428	180	239	9	83
천안(소)	46	46	20	24	2	
청주(교)	247	238	66	171	1	8
천안(개)	6	6		5	1	
공주(교)	166	152	124	27	1	14
청주(여)	21	18	11	2	5	3
홍성(교)	41	41	22	18	1	
천안(지)	23	23	7	16		
논산(지)	10	9	1	8		1
광주(교)	540	453	240	208	5	87
전주(교)	387	359	218	141		28
목포(교)	180	174	91	83		6
군산(교)	82	82	43	38	1	
순천(교)	108	108	71	37		
제주(교)	31	31	11	20		
장흥(교)	28	24	10	11	3	4

○ '99년 징벌집행 현황

구분 소별	계	금 치				청원작업 정 지	경 고
		소 계	2 월	1 월	20 일		
계	5,663	5,067	2,436	2,440	191	1	595
서울(구)	292	210	36	124	50		82
안양(교)	257	242	97	145			15
영등포(구)	136	110	23	59	28	1	25
성동(구)	68	61	25	36			7
수원(구)	124	114	32	77	5		10
인천(구)	62	62	15	47			
영등포(교)	158	120	37	68	15		38
수원(교)	11	11	6	5			
의정부(교)	116	104	71	29	4		12
춘천(교)	187	179	99	80			8
원주(교)	162	150	103	47			12
강릉(교)	28	19	9	6	4		9
평택(지)	1	1		1			
대구(교)	395	375	230	141	4		20
청송(교)	260	211	120	91			49
부산(구)	294	294	142	152			
부산(교)	365	364	180	184			1
마산(교)	115	114	52	62			1
청송1(감)	78	59	36	22	1		19
청송2(감)	32	25	17	8			7
청송2(교)	131	130	73	55	2		1
대구(구)	91	79	14	61	4		12
김천(소)	51	51	34	17			
진주(교)	248	217	147	63	7		31
안동(교)	108	108	58	50			
울산(구)	81	73	24	42	7		8
경주(교)	91	80	36	36	8		11
대전(교)	327	225	87	130	8		102
천안(소)	71	71	36	34	1		
청주(교)	147	138	69	69			9
천안(개)	5	5		3	2		
공주(교)	105	93	61	31	1		12
청주(여)	9	6	1	2	3		3
홍성(교)	47	41	28	11	2		6
천안(지)	26	19	5	14			7
논산(지)	20	20	12	8			
광주(교)	364	317	157	141	19		47
전주(교)	313	296	125	162	9		17
목포(교)	107	102	61	40	1		5
군산(교)	83	77	37	38	2		6
순천(교)	47	47	16	29	2		
재주(교)	23	20	9	9	2		3
장흥(교)	27	27	16	11			

12. '98. 9 ~ '99. 9월 현재까지 재소자 수용실태와 관련하여

- 1) 각 교정시설별 재소자에 대한 징계위 소집건수와 처리결과
- 2) 재소자 징벌집행 현황 (교도소별 사유 및 징벌내용)
- 3) 재소자 수용관련 전국 교도소, 구치소별
 - 재소자 수용을 위한 감방의 최소규모와 최대규모 및 수용인원
 - 징벌방 내부구조도
 - 징벌방 규모
 - 징벌시 사용하는 계구 종류 및 용처

○ '98. 9 ~ '99. 9월 현재까지 교정시설별 징벌위원회 소집건수는 징벌인원과 비슷하며, 징벌사유 등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1. 교정시설별 징벌집행 현황
2. 징벌사유 및 내용 현황

○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규모는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혼거실은 2.30~5.65평, 독거실은 0.53~1.74평으로 1인당 수용기준 면적은 0.5 평이며, 혼거실에는 면적에 따라 3~1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 징벌실은 독거실중 일부를 사용하고, 구조도 일반독거실과 비슷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 계구는 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가 있으며 계구의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자 등에게 인명의 보호와 사고예방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징벌의 수단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붙임 #

1. 교정시설별 징벌집행 현황

구분	계	금 치			청원작업 정 지	경 고
		소 계	2 월	1 월		
소별					2	788
계	8099	7309	3517	3537		105
서울(구)	419	314	60	166		17
안양(교)	379	362	162	198	1	37
영등포(구)	207	169	43	94		7
성동(구)	98	91	34	57		10
수원(구)	162	152	45	99		8
인천(구)	90	90	23	67		41
영등포(교)	184	143	47	81		2
수원(교)	34	32	14	18		18
의정부(교)	172	154	99	50		9
춘천(교)	251	242	140	102		15
원주(교)	264	249	185	64		11
강릉(교)	37	26	12	9		5
평택(지)	9	9	4	5		24
대구(교)	603	579	343	231		5
청송(교)	365	301	160	141		64
부산(구)	432	431	189	239	3	1
부산(교)	443	442	221	221		1
마산(교)	207	205	95	110		2
청송1(감)	117	87	49	37	1	30
청송2(감)	64	50	31	19		14
청송2(교)	179	178	95	80	3	1
대구(구)	91	79	14	61	4	12
김천(소)	66	66	47	19		32
진주(교)	358	326	208	109	9	
안동(교)	154	154	74	80		14
울산(구)	109	95	31	57	7	12
경주(교)	114	102	46	48	8	148
대전(교)	493	345	135	202	8	
천안(소)	87	87	42	44	1	13
청주(교)	242	228	95	133		1
천안(개)	11	11		8	3	
공주(교)	174	158	113	43	2	16
청주(여)	14	10	4	3	3	4
홍성(교)	53	47	30	14	3	6
천안(지)	34	27	9	18		7
논산(지)	20	20	12	8		
광주(교)	527	453	216	214	23	74
전주(교)	428	407	184	214	9	21
목포(교)	158	147	90	56	1	11
군산(교)	106	100	52	45	3	6
순천(교)	77	77	31	44	2	
제주(교)	34	31	14	15	2	3
장흥(교)	33	33	19	14		

붙임 #

2. 징벌사유 및 내용 현황

징벌사유	징벌종류	합 계	금 치	금 치	금 치	작 업 상여금 삭 감	청 원 작 업 정 지	도 서 열 램 제 한	경 고
			2 월 이 하	1 월 이 하	20 일 이 하				
계		8099	3517	3537	255		2		788
교도관에 폭언(폭행)		230	192	25	2				11
불 식		17	5	3	3				6
작 업 거 부		426	239	164	1				22
금품소지 등		74	35	24	5				10
흡 연 등		577	292	246	12				27
소란·난동		669	369	225	12				63
싸움·폭행		3285	1473	1386	69				357
신 입 식		23	13	9					1
부정물품 제작		233	67	132	6				28
지정장소 이탈		96	29	51	3				13
사행행위		139	21	76	25				17
인화물질 소지		17	1	5	10				1
갈취·공갈		36	6	24	1				5
지시 및 입실거부		1380	518	700	54				108
추 행		41	11	27	2				1
부정물품 교환		98	26	52	5				15
관급품파괴 등		97	26	56	6				9
밀 회 밀 담		24	5	11	4				4
자살기도 및 자해·문신		250	111	122	1				16
부정 연락		178	40	105	12		2		19
계 구 해 탈		6	3	2	1				
고 성 방 가		14		13	1				
기 타		189	35	79	20				55

23.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98. 1 - '99. 9 현재)

○ 연도별 교정사고 현황

연도별 \ 구분	계	도 주	자 살	폭 행
계	466		10	456
98년	243		5	238
'99. 8월말	223		5	218

○ 사고내용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 징벌 등으로 처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병과하고 있으며, 특히 수용자간 폭행사건의 경우 2주이상 상해발생시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0. '99. 8월 현재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실 현황
(각 교도소별 변호인 접견회수, 접견실 수용능력 등)

○ 교정기관별 변호인 접견실 현황

('99. 1. 1- '99. 8.31)

소별	구분	변호인 접견 수	접견실 수용능력 (접견호실)	비 고
계		64,781	150개호실	
서울(구)		11,135	18개호실	
안양(교)		2,587	3개호실	
영등포(구)		5,123	6개호실	
성동(구)		4,973	5개호실	
수원(구)		4,956	7개호실	
영등포(교)		1,389	2개호실	
인천(구)		3,483	10개호실	
수원(교)		11	1개호실	
의정부(교)		1,515	3개호실	
춘천(교)		559	2개호실	
원주(교)		174	2개호실	
강릉(교)		367	2개호실	
평택(지)		573	2개호실	
대구(교)		4,126	7개호실	
청송(교)		2	1개호실	
부산(구)		4,742	7개호실	
부산(교)		2,525	5개호실	
마산(교)		1,385	6개호실	
청송 1(감)			1개호실	
청송 2(감)			1개호실	
청송 2(교)			1개호실	
대구(구)		2,407	5개호실	
김천(소)		373	1개호실	
진주(교)		409	3개호실	
안동(교)		243	1개호실	
울산(구)		951	3개호실	
경주(교)		793	3개호실	
대전(교)		1,782	6개호실	
천안(소)			1개호실	
청주(교)		1,275	2개호실	
천안(개)			1개호실	
공주(교)		90	2개호실	
청주(여)		29	1개호실	
홍성(교)		1,450	3개호실	
천안(지)		502	3개호실	
논산(지)		108	2개호실	
광주(교)		2,166	10개호실	
전주(교)		873	3개호실	
목포(교)		238	2개호실	
군산(교)		363	2개호실	
순천(교)		737	1개호실	
제주(교)		562	2개호실	
장흥(교)		78	1개호실	

29. 각 교정시설별 재소자들의 노역으로 벌어들인 최근 5년간의 수입금 내역 및 사용처, 재소자 1인의 연평균 노역일수
- 재소자의 노역 종사에 대한 일당

○ 최근 5년간 교도작업 수입금 내역 및 사용처

(백만원)

연도별	수입금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사 용 처 (세 출)					
		계	작 업 상여금	직 업 훈련비	재료구입등 작업운영비	시 설 보완비	관리비등 기타경비
'94	20,420	20,219	4,769	1,121	12,064	2,214	51
'95	21,472	22,770	5,824	1,171	12,995	2,720	60
'96	22,899	22,927	5,742	1,251	13,130	2,676	128
'97	24,493	23,655	5,755	1,249	14,345	2,172	134
'98	24,363	24,558	4,569	1,361	15,922	2,579	127

○ 재소자 1인의 연평균 노역일수

- 연 평균 노역일수 : 290일
- 1일평균 노역시간 : 3~4시간 (규정상 8시간이나 각종 교육교화활동, 운동, 접견, 목욕 등의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작업시간은 3~4시간에 불과함)

○ 재소자의 노역종사에 대한 일당

- 시설내작업자 : 500원 ~ 4,000원 차등지급
- 외부통근작업자 : 수령한 임금(1일 9,000원 ~ 19,000원)의 70%를 작업상여금으로 지급

28.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주한미군 재소자의 수용시설과 내국인 수용시설과의 비교 (면적, 세면대, 침대 등 시설)

○ '99. 9. 30 현재 한.미행정협정 관련 수용자는 4명(기결)으로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여 별도의 수용시설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수용편의를 위하여 남자수형자는 천안소년교도소에 여자수형자는 천안구치지소에 수용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는 재판관할구역 소재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 수용실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72평방피트(약2.02평) 정도로 내국인 보다 다소 넓은 편이나, 이는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습관을 고려한 것이며, 세면시설과 간단한 주방시설은 공동으로 사용케하고 있습니다 그외 시설구조는 내국인의 수용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21. 민영교도소 설립과 관련하여 여론의 의견수렴 상황과 민영교도소 설립추진 현황

- 교정시설의 신축에 따른 재정난 타개와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민영교도소제도를 도입키로 결정, 현재 법안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98. 11. 27 민영교도소제도 도입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 '99. 7월에는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계부처(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 금년 12월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6. 무계호 외부통근작업 현황 - '99. 1. 1 ~ '99. 8. 31

- '99. 3월부터 수원, 천안개방교도소에서 85명을 시범실시 후
- '99. 6월부터 6개기관 167명으로 확대 하였으며,
- '99. 8. 31 현재 8개기관 225명(연 18,746명)이 무계호 외부통근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실시인원

기관명	인원	기관명	인원
수원교도소	48	천안개방교도소	83
강릉교도소	7	청주교도소	8
마산교도소	40	광주교도소	15
경주교도소	4	군산교도소	20
계		8개기관	225명

47. 수형자 외출,외박시행지침

수용자 외출,외박시행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방침

- 수형자 귀휴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되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기간동안 가정 또는 사회에 내보낼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
- 외출·외박 시행 횟수는 귀휴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한 횟수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시행기간

- 외 출 : 평일 또는 휴일 주간에 12시간 범위내에서 허가
- 외 박 : 토요일 일과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또는 공휴일 전일 일과 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오후까지 허가(연휴기간에는 72시간 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출발 및 귀소시간 : 소장이 요일, 계절, 수용자 일과시간 등을 감안 하여 결정, 수용자 취침시간 이전까지는 귀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허가요건

행형법 제44조제3항 및 귀휴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귀휴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 가석방예정자로 선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 군산교도소, 마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사회적응 훈련중에 있거나 자소에서 가석방 대기중에 있는 수형자 또는 가출소심사 신청중에 있는 피보호감호자

- 천안개방교도소, 수원교도소에 수용중인 개방처우대상자 또는 과실범 수용자
- 초범자로서 가석방요건에 해당되어 가석방 신청이 예상되는 잔형기 1년 미만 수용자

□ 향후계획

- '99년 하반기중 시행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점차 확대시행 예정

24. 8월말 현재 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 수용현황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상별·죄명별 인원 통계 및 평균 치료기간

○ 증상별 치료기간

구 분	계	정신 분열	간질	정신 지체	성격 장애	망상 장애	조울증	알콜	약물	기타
재소자	690	370	21	43	25	19	1	29	50	132
평균치료 기간 (년)	3.2	4.7	3.9	4.5	4.0	2.7	2.2	2.4	1.3	2.8

※ 기타는 우울증, 유해화학 등

○ 죄명별 치료기간

구 분	계	살인	치사	폭력	절도	방화	강도	강간	약물류	기타
총출소자	690	246	64	158	60	38	16	35	41	32
평균치료 기간 (년)	3.2	4.3	5.2	3.5	2.4	2.8	3.1	3.0	1.1	3.4

※ 기타는 무고,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등

☐ 증상별 연평균 입소자수와 완치후 퇴소자수

○ 증상별 입·출소인원

구 분	계	정신 분열	간질	정신 지체	성격 장애	망상 장애	조울증	알콜	약물 류	기타
총입소자	2,211	1,254	97	78	95	59	31	112	157	328
연 평균 입소인원	185	105	8	7	8	5	3	9	13	27
총출소자	1,442	834	67	33	64	37	30	82	107	188
연 평균 출소인원	122	70	6	3	5	3	3	7	9	16

☐ 운영상 문제점 : 없 음

17. 교도소별 교도작업 현황 - 작업별(직영, 위탁, 임대, 도급) 투입인원, 생산량, 작업상여금 총액, 처리내역 - '97. 1. 1 ~ '99. 8. 31

○ 작업별 투입인원, 생산량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기 타 (훈련생등)		관용 작업
	1일 평균 취업 인원	생산액	1일 평균 취업 인원	생산액	1일 평균 취업 인원	생산액	1일 평균 취업 인원	생산액	1일 평균 취업 인원	생산액	1일 평균 취업 인원
'97	22,149	25,097	5,249	17,600	6,910	3,025	1,262	4,009	3,455	463	5,273
'98	22,385	24,678	5,153	18,538	7,487	2,493	1,075	2,697	3,020	950	5,650
'99. 8.31 현재	25,369	14,287	5,342	10,155	8,641	1,821	1,347	2,214	4,139	97	5,900

○ 작업상여금 총액 및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예산액	지급액	잔 액	지급인원	평균지급액
'97		6,394,312	5,755,458	638,854	22,670	253
'98		6,437,730	4,569,035	1,868,695	22,712	201
'99. 8.31 현재		6,437,730	3,093,199	3,344,531	25,445	122

20. 교도소내 단식, 농성, 난동사건 내용 및 처리내역 ('98. 1 - '99. 9 현재)

- '98. 1 ~ '99. 9월까지의 교도소내 불식은 총 221건 564명이며
 - 공안(관련)사범들이 각종 기념일 추모나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서 폐지 등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안을 요구하며 간혹 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담을 통하여 취식토록 하고 전원 훈계조치 하였음
- 교도소내 난동사건 현황('98. 1 ~ '99. 9. 30)
 - '98. 2. 2, 14:00경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11명이 수용사동 근무 직원을 폭행하고 거실내 TV, 액자 등 기물을 손괴하면서 난동을 부림 (전원 징벌 및 입건송치)
 - '99. 2. 7, 14:30경 춘천교도소 수용자 5명이 직원을 인질로 잡고 대치하다 진압됨 (전원 징벌 및 입건송치)
 - '99. 4. 22, 14:30경 부산교도소 수용자 1명이 창문을 파손하는등 소란을 피우자 타 수용자 24명이 동조,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림(수용자 2명 징벌 및 입건송치, 23명 징벌조치)

16. 각 교도소별 교정사고 현황(교정사고별 분류 - 도주, 폭행, 자살건수 / 연도별, 처리결과 적시) - '97. 1. 1 ~ '99. 8. 31

○ 연도별 교정사고 현황

연도별 \ 구분	계	도주	자살	폭행
계	702	4	18	680
97년	236	4	8	224
98년	243		5	238
'99. 8월	223		5	218

- 사고내용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징벌 등으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수용자 폭행사건의 경우 2주이상 상해 발생시는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6.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98. 1월부터 '99. 9월 현재 가석방 현황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무부 검찰, 보호, 교정국장 등 내부인사와 교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변호사 각 1인, 대학교수 2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98. 1월부터 '99. 9월 현재까지 총 9,558명을 가석방 하였습니다

26. 전국 교도소별 의무시설과 관련하여

- 1) 의무관 현황(의사수, 간호사 수)
- 2) 의사 1인 대비 재소자 비율
- 3) 재소자 1인별 의무실 이용현황(치료일수, 병원 입원일수)
- 4) 의무실 비치 의약품 목록
- 5) 재소자 1인당 의약품비(약대, 처치대 등)

- 전국 교정시설 의무관 등의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전국 교정시설 의무관 등의 현황

- 의사 1인대비 수용자 비율

수용자 1일 평균인원	의사	의사 1인 대비 재소자 비율
68,000명	85명	800명

※ 의사에는 공중보건의 26명 포함

- 수용자 의무실 이용현황

(단위 : 명)

기간	평균 수용인원	교도소내 치료					외부병원 치료		
		계	수술	투약	처치	의사초빙	계	수술	치료
'97.9~'98.8	63,647	3,693,260	227	3,442,582	229,295	21,156	4,683	735	3,948
'98.9~'99.8	68,000	4,509,122	251	4,164,930	313,965	29,976	7,355	1,024	6,331

○ 의무실 비치 의료품 품목

각 교정시설 의무과에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와 상비 약품을 비치하고, 상비하고 있지 않은 약품은 필요시마다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각 교정시설에 비치된 의료장비 및 약품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교정기관 비치 의료장비 및 의약품 현황

○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32,138원입니다

붙임 # 1. 전국 교정시설 의무관 등의 현황

('99. 8.31 현재)

소별	구분	계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공중보건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42	136	64	59	3	3	65	64	10	10	26
서울지방교정청	소계	49	47	22	20	3	3	22	22	2	2	5
	서울(구)	8	7	4	3	1	1	2	2	1	1	1
	안양(교)	5	5	2	2	1	1	2	2			
	영등포(구)	4	4	2	2			2	2			
	성동(구)	6	6	2	2	1	1	2	2	1	1	
	수원(구)	6	6	3	3			3	3			
	영등포(교)	4	4	2	2			2	2			
	수원(교)	3	3	1	1			2	2			
	인천(구)	5	5	2	2			3	3			
	의정부(교)	2	2	1	1			1	1			1
	춘천(교)	2	1	1	0			1	1			1
	원주(교)	2	2	1	1			1	1			1
	강릉(교)	2	2	1	1			1	1			1
대구지방교정청	소계	53	51	25	23			23	23	5	5	11
	대구(교)	5	4	3	2			2	2			1
	청송(교)	4	4	2	2			1	1	1	1	1
	부산(구)	4	4	2	2			2	2			
	부산(교)	2	2	1	1			1	1			1
	마산(교)	4	4	2	2			2	2	1	1	1
	청송1(감)	5	4	2	1			2	2	1	1	1
	청송2(감)	5	5	2	2			2	2	1	1	1
	청송2(교)	2	2	1	1			1	1			1
	대구(구)	4	4	1	1			3	3			
	김천(교)	2	2	1	1			1	1			1
	진주(교)	10	10	5	5			3	3	2	2	1
	안동(교)	2	2	1	1			1	1			1
울산(구)	2	2	1	1			1	1			1	
경주(교)	2	2	1	1			1	1			1	
대전지방교정청	소계	21	20	9	8			11	11	1	1	5
	대전(교)	8	7	3	2			4	4	1	1	1
	천안(소)	3	3	1	1			2	2			1
	청주(교)	2	2	1	1			1	1			1
	천안(개)	2	2	1	1			1	1			1
	공주(교)	2	2	1	1			1	1			1
	청주(여)	2	2	1	1			1	1			1
	홍성(교)	2	2	1	1			1	1			1
광주지방교정청	소계	19	18	8	8			9	8	2	2	5
	광주(교)	5	5	2	2			2	2	1	1	
	전주(교)	3	3	1	1			2	2			1
	목포(교)	3	3	1	1			1	1	1	1	1
	군산(교)	2	2	1	1			1	1			1
	순천(교)	2	2	1	1			1	1			1
	제주(교)	2	2	1	1			1	1			1
장흥(교)	2	1	1	1			1	0			1	

1. 각 구치소별로

1) 구치소 근무의사 현황

- 이름, 공무원 임용일자, 현 직급

2) 위 의사중 본인이름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개업,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 현황

- 이름, 병원 또는 의원명, 주소, 개업일시

3) 위 2)항 해당의사들의 구치소 근무내역 및 근무일지 사본(사본은 '99년 1월분만)

4) 위 2)항 해당의사들의 개인의료행위 실적(개업이후 연도별 국세청신고 소득기준 소득액)

○ 전국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의무관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교정기관 근무의사 현황

○ 교정기관 의무관중 병.의원을 개업을 하고 있는 의무관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2 비전임 의무관 개업현황

○ 비전임 의사들의 구치소 근무내역 및 근무일지 사본에 대하여는

- 비전임 의사도 1일 1회이상 출근을하여 환자진료를 하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발생시에는 평일은 물론 야간이나 휴일에도 출근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개인별 근무일지는 별도로 비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출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임 의무관의 개인의료행위 실적은 자료파악이 곤란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교정기관 근무의사 현황('99. 9. 30현재)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일	전임여부
서울(구)	의무부이사관	이규섭	93.10.15	전 임
	의무서기관	이 현	93. 7.19	전 임
	의무사무관	조영민	98. 6.11	전 임
안 양(교)	의무서기관	김해웅	97. 5. 1	전 임
	의무사무관	최광섭	94. 5. 9	전 임
영등포(구)	의무서기관	윤중식	94. 5. 9	전 임
	의무사무관	김득중	98.12.24	전 임
성 동(구)	의무서기관	김형주	97. 9. 1	전 임
	의무사무관	장병기	99. 4.30	전 임
수 원(구)	의무서기관	신현석	99. 6. 23	전 임
	의무사무관	조숙형	96. 9. 1	전 임
평 택(지)	의무사무관	최동환	96.10.29	전 임
영등포(교)	의무서기관	이희봉	98.12.14	전 임
	의무서기관	김상중	98.12.14	전 임
수 원(교)	의무서기관	박종일	83. 6.15	전 임
인 천(구)	의무서기관	서무창	91. 5.15	전 임
	의무사무관	김일환	99. 3. 8	전 임
의정부(교)	의무서기관	임영균	98.10. 9	전 임
원 주(교)	의무사무관	홍규식	98.12.14	전 임
강 릉(교)	의무서기관	노현부	85. 5. 1	비전임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일	전임여부
대 구(교)	의무사무관	이경률	99. 6.23	전 임
	의무사무관	백영국	99. 8. 2	전 임
청 송(교)	의무서기관	한용웅	98.10. 9	전 임
	의무서기관	전종환	98. 9. 1	전 임
부 산(구)	의무서기관	김종대	98.12.14	전 임
	의무서기관	김도균	98.12.14	전 임
부 산(교)	의무서기관	유명주	98. 9. 1	전 임
마 산(교)	의무서기관	김광웅	99.6.23	전 임
	의무사무관	김세욱	99. 3. 8	전 임
청송1(감)	의무서기관	강인주	91.10. 1	비전임
청송2(감)	의무서기관	박무영	97.11.11	비전임
	의무사무관	나종덕	97.11.11	비전임
청송2(교)	의무사무관	박경범	99 .6.23	전 임
대 구(구)	의무서기관	최준영	99. 4.30	전 임
김 천(교)	의무서기관	백철홍	99. 3. 8	전 임
진 주(교)	의무서기관	최진우	99. 3. 8	전 임
	의무서기관	한창섭	98. 6.11	비전임
	의무서기관	곽태섭	94. 5. 9	비전임
	의무사무관	이영곤	98. 1.19	비전임
	의무사무관	조영준	99. 3. 8	전 임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일	전임여부
안 동(교)	의무서기관	김석곤	96. 9. 1	비전임
울 산(구)	의무서기관	윤경일	95. 7.29	비전임
경 주(교)	의무서기관	김성환	98.12.14	전 임
대 전(교)	의무서기관	전종석	93.10.15	전 임
논 산(지)	의무사무관	정인수	99. 3.22	전 임
천 안(소)	의무서기관	이학용	98.12.14	전 임
청 주(교)	의무서기관	최 강	99. 3. 8	전 임
천 안(개)	의무서기관	이정복	99. 3. 8	전 임
공 주(교)	의무서기관	홍승원	98. 9. 1	비전임
청 주(여)	의무서기관	전진표	93.11.30	전 임
홍 성(교)	의무서기관	윤성로	94.11.12	비전임
광 주(교)	의무서기관	정길영	90. 6.28	전 임
	의무사무관	김병곤	95. 5. 1	전 임
전 주(교)	의무서기관	주재호	90. 5.15	전 임
목 포(교)	의무서기관	강 철	90. 6.26	전 임
군 산(교)	의무서기관	곽홍수	84. 8. 3	비전임
순 천(교)	의무서기관	박경철	96. 9. 1	비전임
제 주(교)	의무서기관	박재홍	99. 3. 8	비전임
장 흥(교)	의무서기관	위성읍	98. 9. 1	비전임

붙임 #2

○ 비전임 의무관 개업현황

(‘99. 9.30현재)

소 속	성 명	병원, 의원명	주 소
강릉교도소	노현부	한일의원	강원도 강릉시 교2동 136-2
청송제1감호소	강인주	강인주 신경외과 의원	경북 안동시 운흥동 187-41
청송제2감호소	박무명	박무명 내과의원	경북 안동시 대석동 275-1
	나종덕	청송치과 의원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원막리
진주교도소	곽태섭	한빛 신경정신과 의원	경남 진주시 평안동 200-1
	한창섭	한창섭 피부비뇨기과 의원	경남 진주시 대안동 19-9
	이영곤	이영곤 내과의원	경남 진주시 중안동 3-7
안동교도소	김석곤	인선 외과의원	경북 안동시 송현동 298-5
울산구치소	윤경일	로타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 4동
공주교도소	홍승원	기독교병원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167-6
홍성교도소	윤성로	윤외과 의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구 299-58
군산교도소	곽홍수	곽홍수 일반외과	전북 군산시 금광동 170-30
순천교도소	박경철	박외과 의원	전남 순천시 저전동 164-2
제주교도소	박재홍	박재홍 내과의원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68-11
장흥교도소	위성읍	성경의원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30

6. '99. 9월 현재 전국교도소 및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 배정된 전체 의료비와 재소자 1인당 의료비, 의료비의 집행실태, 의료관계인원, 의료인 1인당 1일평균 진료건수 · 1일 근무시간

○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정된 의료비 및 집행실태

(단위 : 천원)

'99 예산액	'99. 9. 30현재 재배정액	비 고
2,024,684	1,847,008	

○ 수용자 1인당 의료비 : 32,138원

○ 의료관계 인원현황 ('99. 9. 30현재)

구 분	계	의 사	약 사	간호사	의료기사	비 고
정 원	142	64	3	65	10	
현 원	136	59	3	64	10	

※ 공중보건의 26명 별도 배치

○ 의사들은 의무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용사동을 순회하면서 면담 등을 하며, 1인이 1일 평균 31명을 진료 및 상담을 하고 근무 시간은 일반공무원과 같습니다

7. 교도소, 구치소내에 여자사동과 남자사동이 같이 있는 경우, 의료인이 각각 배치되어 있는지 따로 있는지 현황

=====

- 각 교정시설에는 의무과를 두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남자사동과 여자사동을 구분하여 배치하지는 않고 있으며
 - 평소 순회진료 등을 통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약실험 현황

=====

-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의약실험을 한 사실이 없어 현황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98. 1월부터 '99. 9월 현재 교도소(구치소 포함)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소자간 또는 교도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사건개요 및 처리내역

○ '98. 1 ~ '99. 9월말 현재까지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수용자가 고소한 건수는 모두 59건으로 처리결과는 무혐의 21건, 고소취하 5건, 기소유예 3건, 재판계류중 1건이며, 나머지 29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 전국 교정시설내에서 수용자간 발생한 폭행, 상해 등의 현황 ('98. 1 ~ '99. 8월)

계	폭력행위	폭행치사	폭행치상
412	71	1	340

※ 사건관련자 전원 자체 징벌 및 입건송치함

33. 교정기관별 공무원 정원 및 현원

○ 교정공무원 정.현원 현황 ('99. 9. 10 현재)

구 분	정 원	현 원	결 원	비 고
총 계	12,245	11,764	-481	
서울지방교정청	30	31	+1	
대구지방교정청	28	29	+1	
대전지방교정청	29	30	+1	
광주지방교정청	29	30	+1	
서울구치소	707	682	-25	
대구교도소	464	443	-21	
대전교도소	655	639	-16	
청송교도소	343	325	-18	
부산구치소	507	469	-38	
안양교도소	456	425	-31	
광주교도소	416	391	-25	
영등포구치소	437	422	-15	
성동구치소	443	437	-6	
수원구치소	474	467	-7	
전주교도소	303	286	-17	
인천구치소	400	391	-9	
영등포교도소	371	348	-23	
부산교도소	310	288	-22	
마산교도소	311	294	-17	
청송1보호감호소	264	246	-18	
청송2보호감호소	262	244	-18	
천안소년교도소	295	285	-10	
청주교도소	267	264	-3	
수원교도소	242	241	-1	
의정부교도소	257	246	-11	
청송2교도소	256	242	-14	
대구구치소	247	237	-10	
춘천교도소	234	225	-9	
김천소년교도소	235	229	-6	
진주교도소	281	272	-9	
목포교도소	259	254	-5	
군산교도소	245	240	-5	
천안개방교도소	101	101	0	
순천교도소	254	247	-7	
원주교도소	222	215	-7	
안동교도소	251	244	-7	
공주교도소	217	209	-8	
울산구치소	156	145	-11	
청주여자교도소	136	130	-6	
경주교도소	182	168	-14	
제주교도소	166	165	-1	
홍성교도소	172	167	-5	
강릉교도소	164	158	-6	
장흥교도소	167	163	-4	

32. 현정부 출범이후 교도관 비리현황과 처리결과

- 현정부 출범이후 '99. 9월 현재까지 교정공무원의 비리는 총 5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관련자는 모두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 비리유형과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계	비위유형별				처리결과				
		금품수수	부정물품제공	업무부당	기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98. 2 ~ '99. 9	50	28	15	7		16	17	6	7	4

12. 각 교도소별 교도관 및 재소자 불법행위 현황('98. 1 - '99. 9 현재)

- '98. 1월부터 '99. 9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교정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금품수수, 부정물품제공 등)로서 총 55건이며, 모두 징계조치하였습니다
 - 교도관 및 재소자의 불법행위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붙임 1. 연도별 교도관의 불법행위 현황 및 처리결과
2. 수용자 불법행위 현황

붙임 #1

◦ 연도별 교도관 불법행위 현황 및 처리결과('98. 1. 1 ~ '99. 9. 30)

연도별	계	비위유형별				처 리 결 과				
		금품 수수	부정 물품 제공	업무 부당	기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55	30	15	10		17	19	6	7	6
'98	35	22	10	3		12	10	5	5	3
'99년 9.30	20	8	5	7		5	9	1	2	3

붙임 #2

◦ 수용자 불법행위 현황('98. 1 ~ '99. 8월)

계	도 주	폭력행위	폭행치사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기 타
454		71	1	340	28	14

※ 사건관련자 전원 자제징벌 및 입건송치함

13. 각 교도소·구치소별 교도관 가혹행위 적발현황(적발건수는 연도별, 가혹행위 처리결과 적시) - '97. 1. 1 ~ '99. 8. 31

◦ '97. 1 ~ '99. 8월말까지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수용자가 고소한 건수는 모두 58건으로 처리결과는 무혐의 21건, 고소취하 5건, 기소유예 3건, 재판계류중 1건이며, 나머지 28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50. 교도소내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등 현황

=====

- 전국 교정시설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 등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97. 1~’99.8월말 현재)

계	폭력행위	폭행치사	폭행치상
595	99	2	494

※ 사건관련자 전원 자체징벌 및 입건송치함

27.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사망자 실태

- 연도별, 연령대별 사망자수와 연평균 전체 수용자(재소자)수에 대한 사망비율
- 사망자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원인, 사망자 주소 및 보호자 연락처 (전화번호), 사망시기, 수용이유(죄명)
- 사망자 진료카드

=====

- ‘97. 1 ~ ’99. 8. 31까지의 사망자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사망자 현황
- 연도별, 연령대별 사망자수, 연평균 전체수용자에 대한 사망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사망자수

년도	사망자수	비 고
계	77	
’97	31	
’98	30	
’99. 8월	16	

- 연령대별 사망자수 (‘97.1.1~’99.8.31)

구 분	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인 원	77	5	9	23	22	9	4	5